

 국토교통부		<b>보 도 자 료</b>		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배포일시	2020. 2. 10(월) 총 3매(본문 3)	
담당 부서	녹색도시과	담 당 자	• 과장 성호철, 사무관 심인보, 주무관 정훈 • ☎ (044) 201-3745, 3744	
보 도 일 시		2020년 2월 11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2. 11(화) 10:00 이후 보도 가능		

##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제된 GB 주민도 주택 신축 가능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2.11 의결, 2.21 시행 -

- 앞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그린벨트 이하 GB)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당해 해제지역의 기존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이축\*자격이 부여된다.

\* 이축(移築)이라 함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택, 근린생활시설이 철거되는 경우 GB에 옮겨서 신축하는 것을 말함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GB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도 GB인 상태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과 동일하게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이축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2월 11일 통과하여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산업단지조성, 도시개발사업 등 GB에서 허용되지 않은 사업

\*\* 도로·철도사업, 가스공급 시설사업 등 GB에서 허용하는 사업

- 이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작년 8월 20일에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 개정 작업의 일환으로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GB 내 주민 불편해소 등 규제개선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①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

- 그간 GB에서 허용되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GB의 입지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에 이축을 허용하고, GB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이축을 할 수 없었다.

\* 새로운 진입로, 전기·수도·가스 등 간선공급설비가 필요없는 토지로 주택 등의 철거일 당시까지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동법 시행규칙 제6조)

- 앞으로는 GB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도 주택, 근린 생활시설에 대하여 **GB로 이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GB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대책에서 제외되고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이축자격도 부여받지 못하던 주민들**(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거주하고 있지 않은 기존 주택 소유자)도 **혜택**을 받게 되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은 해당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GB가 해제 되고 시행일 당시 종료되지 않은 공익사업인 경우에 해당 주민이 주택 등의 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 아울러,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체계성, 안정성, 신뢰성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이를 위해, 그간 민간에서 1년 단위 위탁계약을 통해 운영해 온 **GB관리전산망\*** 업무를 2월 21일부터는 공간정보 전문 공공기관인 국토정보공사(LX공사)에 위탁하여 수행하기로 하였다.

\* 개발제한구역의 경계, 환경평가등급, 불법행위 관리 등 GB 운영 및 관리 전산망

## ② GB 입지규제 및 절차 간소화

- GB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 등을 위해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하였다.

i) 그간 지역조합에만 허용하던 GB 내 농산물 판매 등을 위한 공판장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모든 조합으로 확대하여 앞으로는 품목조합도 GB에서 공판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ii) 도심 내 부족한 택배화물 분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 유희부지에도 택배화물 분류시설 설치를 허용기로 하였다.

\* 서울·경기권의 GB 내 도시철도 차량기지 유희부지는 수서·지축·고덕·방화·신내·천왕·도봉·모란 등 총 8개소

iii) 친환경차 보급, 미세먼지 감축 등을 위하여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수소연료공급시설을 GB 내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대 시설로 설치하는 것도 허용된다.

iv) 도심 인근의 실외체육시설의 수요 증가, GB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실외체육시설이 시·군·구별 설치허용 물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2.2월까지 한시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단체·경기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도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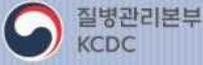
v)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도록 하던 GB 내 열수송시설(도시계획시설부지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연료전지, 태양에너지·풍력·지열 등) 설비 사전 조사·계측시설도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시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 이행에 상당 시일이 소요되어 왔으나, 앞으로 이와 같은 절차 생략 가능

□ 국토교통부 권혁진 도시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GB인 상태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과 GB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 간의 형평성 논란과 입지규제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면서,

○ “GB 관리전산망을 공공기관에 위탁함에 따라 보다 투명하고 철저한 구역관리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보다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심인보 사무관(☎ 044-201-374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수칙

## 감염병 예방 수칙



손바닥, 손톱 밑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가리기!



기침 등 호흡기증상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의료기관 방문 시 필수)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알리기

\*선별진료소 안내: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확인,  
관할보건소 또는 지역번호+120, 1339 문의



감염병이 의심될 땐  
관할보건소 또는 1339,  
지역번호+120 상담

## 중국 여행 시 주의사항



동물 접촉 금지



현지 시장 및 의료기관 방문 자제



발열, 호흡기증상자(기침, 인후통 등)  
접촉 금지



· 기침시 마스크 착용  
·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 중국 여행 후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 귀국 후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발생 시 관할보건소 또는 1339,  
지역번호+120 상담

\* 감염병 발생 정보 확인 : 해외감염병 NOW 에서!

발행일 : 2020.1.29